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31.

발 의 자 : 맹성규 · 문진석 · 이연희
복기왕 · 김영호 · 장철민
박용갑 · 김기표 · 신영대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(대한민국은 1952.12.11. 가입)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 특히,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.

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,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· 정비업 · 공항운영자 · 교육기관 ·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,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(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).
- 나.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「공항시설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·예외가 필요한 경우(전쟁·질병·자연재해·기술발전 등)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함(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).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⑥ 공항운영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그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.
- ⑦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55조의2 및 제6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적용의 면제·예외에 관한 사항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의 면제·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준의 적용의 면제·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전쟁, 질병,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공항안전

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 보다 면제·예외가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

3.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면제·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

4. 그 밖에 공항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, 이 법의 기준 적용에 대한 면제·예외를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,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·예외를 인정한 경우 인정한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.

제64조의2(적용의 면제·예외 위반의 죄) ①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·예외를 인정받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에 위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.

② 제55조의2의 면제·예외를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항운영증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공항운영증명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38조(공항운영증명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한다.</u> <u>⑥ 공항운영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그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.</u> <u>⑦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.</u> <u>제55조의2(적용의 면제·예외에 관한 사항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의 면제·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</u>

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준의 적용의 면제·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전쟁, 질병,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공항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 보다 면제·예외가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

3.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면제·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

4. 그 밖에 공항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, 이 법의 기준 적용에 대한 면제·예외를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,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·예외를 인정한 경우 인정한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

<신 설>

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.

제64조의2(적용의 면제·예외 위반의 죄) ①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·예외를 인정받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에 위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.

② 제55조의2의 면제·예외를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